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85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민병덕 · 전용기 · 김승원  
이인영 · 한민수 · 김영배  
이강일 · 양부남 · 박민규  
김현정 · 김문수 · 박정현  
오세희 · 장철민 · 이수진  
황운하 · 한준호 · 조계원  
서영교 · 복기왕 · 송재봉  
박홍배 · 이연희 · 강준현  
안도걸 · 진성준 · 최혁진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9(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에 대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비용등의 100분의 6(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인원(이하 이 조에서 “안전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에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4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안전근로자의 적용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전기·기계장비 및 설비 등의 작동·점검 및 수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3(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 배제)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재해”라 한다)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9조의8, 제3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에 제25조의9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용등(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에 지출한 금액이 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안전관리비용등지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등의 배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25조의9(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에 대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비용등의 100분의 6(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li> <li><u>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li> <li><u>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u></li> </ol>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인원(이하 이 조에서 “안전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근로자의 증가 인원수에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4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안전근로자의 적용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전기·기계장비 및 설비 등의 작동·점검 및 수리 등 안

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  
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6조의3(중대재해 발생 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등 배제)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  
대산업재해(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재해”라 한다)를 발생  
하게 한 사업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

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9조의8, 제3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에 제25조의9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용등(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비용등”이라 한다)에 지출한 금액이 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안전관리비용등지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등의 배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